

저작권 동향 2020년 제5호  
2020. 03. 16.

[영국] 게임 치팅 프로그램의 배포와 설치는 저작권법 위반이다.

최푸름\*

영국 고등법원은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형하고 개작하여 개발한 이른바 ‘치팅 프로그램’ 배포와 설치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림.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허락 없이 원본 프로그램의 본질적 부분의 일부를 복제하여 변형한 뒤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였으며,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여야 하는 온라인 상품을 무제한으로 생성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 그 이유임.

#### □ 배경

- 상기 사건의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은 “Grand Theft Auto V”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게임이며, 주로 GTA로 알려져 있음. 이 프로그램은 1인부터 30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임.
- 피고는 ‘Epsilon’ 의 개발자로, 치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개발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배포함 (이하, ‘이 사건 저작물’ ). ‘이 사건 저작물’ 은 게임 프로그램의 단일 메뉴로서 기능함.

#### □ 사실 관계

- 피고는 ‘이 사건 저작물’ 의 이용자들에게 무기와 차량의 무제한 사용, 가상 화폐의 무한 생성, 다른 플레이어의 게임 방해 등의 방법을 제공하였음.
- 다시 말해, ‘이 사건 저작물’ 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해야 하는 가상의 서비스와 상품, 통화를 무제한으로 생성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침.

- 원고는 세 가지 이유로 계약법과 저작권법 침해 소송을 제기함. 첫째, 피고는 ‘이 사건 저작물’을 개발하기 위하여 게임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이용함.
- 둘째, ‘이 사건 저작물’이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단일 메뉴로서 기능하게 하는 행위는 원본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메뉴 기능을 허락 없이 복제하여 개조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행위임.
- 셋째, 피고는 원고로부터 게임 원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의 우회적 사용을 허가받지 않음.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움.

#### □ 관련 법령 및 판례

- 영국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,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,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 배포하거나, 저작물을 공중에 대여 또는 대출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. 또한, 동 조항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.
- 동 조항 제3항은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, 저작물의 전체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.
- 영국 저작권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, 복제는 일시적이거나 저작물의 다른 사용에 부수적인 복제물의 제작이라고 명시하며,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면 저작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임.
- *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v Newzbin Ltd*<sup>1</sup> 판례에 따르면, 저작물을 적법하게 복제,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서비스에 미쳐야 함.

- *EMI Records Ltd v British Sky Broadcasting Ltd*<sup>2</sup> 판례는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이 명시하는 보호 기술을 철저히 적용하고 따라야 하며, 이를 따랐더라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(window-dreassing, 눈속임)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함.

#### □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

- 영국 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함. 원본 게임에 대한 저작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, 상기 게임을 배포할 권리는 원고의 권리임.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‘이 사건 저작물’ 을 무단으로 배포하였으므로 배포권 침해가 성립함.
- 또한, 원고는 피고에게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를 상업적 수단으로 변형하거나 개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음. ‘이 사건 저작물’ 은 원본 게임 프로그램의 본질적 부분의 일부를 원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기술의 우회적 사용을 통해 무단으로 개작하여 메뉴화한 저작물로서, 이는 원고의 권리 침해임.

#### □ 평가 및 전망

- 상기 사건은 게임이나 상업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일명 ‘버그’ 를 일으키거나 일부를 복제하여 원본 저작물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하거나, 게임 머니, 배포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례라고 판단됨.

<1> <https://www.bailii.org/ew/cases/EWHC/Ch/2010/608.html>

<2> <https://www.bailii.org/ew/cases/EWHC/Ch/2013/379.html>

□ 참고 자료

- <https://www.bailii.org/ew/cases/EWHC/Patents/2020/179.html>

\* University of Debrecen, LL.M